

제 639-1 호

1976.2.1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편집 :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반판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

제 1555 호 :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1976년 2월 10 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555 호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
개 정 규 칙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제 1 항중 • 통계기준제와 통계조사제 • 를 • 통계기준제, 통계조사제와 자료처리제 • 로 하고, 동조 제 2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3. 자료처리제

가. 행정의 이·디·피·에스화에 관한 연구

나. 행정의 이·디·피·에스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

다. 전자계산화와 관련된 자료 처리지도

라. 이·디·피·에스요원사 교육 훈련

제 8 조 제 1 항중 • 개발 1 계, 개발 2 계와 전자계산제 • 를 • 개발 1 계와 개발 2 계 • 로 하고, 동조 제 2 항 제 3

호를 삭제한다.

제 14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중 • 도시계획국 • 을 • 도시정비국 • 으로 한다.

제 25 조 제 1 항중 • 가족계획제와 마약제 • 를 • 와 가족계획제 • 로 하고, • 마약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• 를 삭제하며, 동조 제 2 항 제 2 항 제 4 호를 삭제한다.

제 2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 2 항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1) 의학과에 병원운영제, 의무제, 약무제와 마약제를 두고, 병원운영제장과 마약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의무제장은 지방의무기과로, 약무제장은 지방약무기과로 보한다.

4. 마 약 제

가. 마약의 제제신청의 전달

나. 마약류 취급자 면허신청의 전달

다. 마약사범 및 습관성 약물사범의 단속

<p>라. 기타 마약관리에 관한 통제</p> <p>마. 마약의 수급</p> <p>바. 한의 마약제제의 허가</p> <p>제 36 조 중 "농정과"를 각각 "농속과"로 한다.</p> <p>제 63 조 내지 제 6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63 조 (주택행정과) ① 주택행정과에 주택행정계, 기획계와 용지계를 두고,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② 주택행정과의 지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주택행정계</p> <p>가.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</p> <p>나. 수도행정자문위원회 (주택분과위원회) 의 운영</p> <p>다. 주택행정 통제</p> <p>라.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.</p> <p>2. 기 획 계</p> <p>가. 주택건설 중장기계획의 수립</p> <p>나. 주택관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</p>	<p>다. 주택비 특별회계 예산의 종합조정</p> <p>3. 용 지 계</p> <p>가.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(이하 이조에서 "법"이라 한다) 에 의한 국·공유 재산의 양수·관리 및 처분</p> <p>나. 동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승인 및 명의변경</p> <p>다. 동법에 의한 재산대장의 정비 및 보관</p> <p>라. 동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내의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</p> <p>마. 시영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에 따른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</p> <p>바. 주택용지 및 정착용지의 취득 및 처분</p> <p>사. 주택용지 및 정착용지 재산대장의 정비 및 보관</p> <p>제 64 조 (주택관리과) ① 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계와 보수계를 두고, 주택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보수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.</p>
---	---

㉔ 주택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택관리계

가. 주택비 특별회계 고정자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

나. 재산변동사항 및 명의변경의 승인

다. 시영주택의 입주자 선정, 분양, 관리 및 명의변경

라. 시영주택의 분양금, 임대료,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조정, 징수 및 총괄

마. 시영주택에 관한 각종 납입금의 미납에 대한 제납처분 및 사후관리

바.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납입금의 수납 및 청산사.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보수계

가. 시영주택의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공

나. 시영주택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

제 65조 (주택정비과) ㉕ 주택정비과에 정비계, 단속계와 합축계를 두고, 정비계장과 단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합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.

㉖ 주택정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비계

가. 기존무허가 건물의 철거, 추인가 및 현지계량에 관한 계획과 지도

나. 불량건물 및 초가지붕의 계량과 미화단장

다. 무허가건물 신발생방지 계획 및 지도 계몽

라. 성착지조성사업 계획의 수립

마. 철거민의 이주 정착

바. 합축도의 다목적 활용 및 보급

사.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<p>2. 단 수 계</p> <p>가. 개발상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지도</p> <p>나. 점점순찰반 운영</p> <p>3. 항 속 제</p> <p>가.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</p> <p>나. 항속처리결과에 의한 원도수정</p> <p>다. 항공사진제 의한 도면관리</p> <p>라. 지상촬영 및 판독</p> <p>마. 사진실 운영</p> <p>제 66 조 (주택개발과) ①주택개발과에 관리계, 개량 1 계, 개량 2 계와 단지조성계를 두고,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개량 1 계장, 개량 2 계장과 단지조성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.</p> <p>②주택개발과와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개량 1 계와 개량 2 계의 분장사무는 지역별로 분담하되 분담지역은 과장이 지정한다.</p> <p>1. 관 리 계</p> <p>가.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계획수립과 대이</p>	<p>나. 동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차원</p> <p>다. 동법에 의한 예산의 운영</p> <p>라. 과내 다른과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2. 개량 1 계, 개량 2 계</p> <p>가.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지구의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추량·실제·시공 및 감독</p> <p>나. 동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의 주택개발계획 및 설치시공과 감독</p> <p>3. 단지조성계</p> <p>가. 정착지 및 택지조성사업의 실제·시공 및 감독</p> <p>나. 주택단지 토목공사의 설계·시공 및 감독</p> <p>다. 위 사업시행에 관한 토지분할 및 지적추량</p> <p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